

의안번호	제 468 호
의 결 연 월 일	2010년 3월 일 (제 288 회)

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b>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</b></p>
---

제 출 자	충 청 북 도 지 사
제 출 연 월 일	2010년 3월 2일

#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변경계획안

의안 번호	468
----------	-----

제출연월일 : 2010년 3월 2일  
제출자 : 충청북도지사

## 1. 제안사유

- 우리 도가 10대 현안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청주국제공항과 연계한 항공정비사업(MRO,Maintenance Repair and overhaul)에 필요한 사업 예정부지가 국방부 소유 토지로 현안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발생
- MRO사업 부지활용에 대한 지속적인 건의를 국방부에서 수용하고 국방부가 요구한 대토부지와 현재 국방부 소유 항공정비사업 예정 부지와의 상호 교환이 협의됨에 따라
- 국방부가 제시한 대토 부지를 매입하여 항공정비사업부지와 교환 코자 하는 사항으로서
-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 10조 및 충청북도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 1차변경계획을 수립하여 도의회의 의결을 구하려는 것입니다.

## 2. 주요내용

### □ 재산의 취득

#### 《MRO사업 대토부지 매입》

- 사업기간 : 2010년
- 매입위치 : 청주시 외평동 635-1 등 72필지
- 규 모 : 90,664m<sup>2</sup>
- 대상선정 : 국방부가 제시한 대토부지(사유지)
- 소요예산 : 3,040백만원(공시지가 기준)
  - 감정평가 후 매입시 약 9,500백만원 소요예상
- 투자계획 : 2010년 1회 추가경정예산 반영

**《MRO사업 사업예정부지 교환취득》**

- 사업기간 : 2010년
- 취득대상 : 청원군 내수읍 입동리 191-3등 12필지
- 규 모 : 161,922m<sup>2</sup> ※ 세부내역 별첨
- 재산가액 : 4,528백만원(공시지가 기준)
- 교환사유 : MRO사업에 필요한 사업부지 취득

**□ 재산의 처분**

**《MRO사업 대토부지 매입 후 처분》**

- 사업기간 : 2010년
- 처분재산 : 청주시 외평동 635-1 등 72필지
- 규 모 : 90,664m<sup>2</sup>
- 재산가액 : 3,040백만원(공시지가 기준)
- 처분사유 : 국방부 소유의 MRO사업부지와 교환

**3.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서 : 별첨**

**4. 관계법령 : 별첨**

-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
-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
-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, 제14조
-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조례 시행규칙 제28조



## 2010년도 취득대상 재산목록 (7-2)

(단위 : m<sup>2</sup>)

일련 번호	재 산 표 시		추정가액 (천원)	취 득 시 기	취 득 사 유	취득재산 전소유자 주소성명	비 고
	지목	소 재 지 수 량					
계	토지	84건	252,586.0m <sup>2</sup>	7,567,812	2010	MRO사업부지 및 교환부지	
	건물						
	기타						
1	토지	12건	161,922.0m <sup>2</sup>	4,527,812	2010	MRO사업부지	국방부
	건물						
	기타						
2	토지	72건	90,664.0m <sup>2</sup>	3,040,000	2010	국방부와 교환대 상부지로 취득	
	건물						
	기타						
3	토지						
	건물						
	기타						
4	토지						
	건물						
	기타						
5	토지						
	건물						
	기타						
	토지						
	건물						
	기타						

## 2010년도 처분대상 재산목록 (7-3)

(단위 : m<sup>2</sup>)

일련 번호	재 산 표 시			추정가액 (천원)	처 분 시 기	처 분 사 유	처분재산 전소유자 주소,성명	비 고
	지목	소 재 지	수 량					
계	토지	72건	90,664.0 <sup>m<sup>2</sup></sup>	3,040,000	2010	매입후 국방부와 교환		
	건물							
	기타							
1	토지	72건	90,664.0 <sup>m<sup>2</sup></sup>	3,040,000	2010	매입후 국방부와 교환		
	건물							
	기타							
2	토지							
	건물							
	기타							
3	토지							
	건물							
	기타							
4	토지							
	건물							
	기타							
5	토지							
	건물							
	기타							
	토지							
	건물							
	기타							

## MRO사업을 위한 교환취득 재산목록

(단위 : m<sup>2</sup>, 천원)

일련 번호	재 산 표 시			추정가격	취득시기	취득사유	매도자	비고
	지목	소재지	수 량					
총계		12필지	161,922	4,527,812				
1	잡	청원군 내수읍 입동리 191-3	4,731	132,468	10.12월	교환취득	국방부	
2	잡	청원군 내수읍 입동리 440-3	657	18,396	"	"	"	
3	잡	청원군 내수읍 입동리 230	15,357	42,996	"	"	"	
4	잡	청원군 내수읍 입동리 226-2	760	21,280	"	"	"	
5	잡	청원군 내수읍 입동리 235	2,634	73,752	"	"	"	
6	잡	청원군 내수읍 입동리 127	91,169	2,552,732	"	"	"	
7	잡	청원군 내수읍 입동리 483-3	169	4,732	"	"	"	
8	잡	청원군 내수읍 입동리 441-2	164	4,592	"	"	"	
9	잡	청원군 내수읍 입동리 160	455	6,736	"	"	"	
10	잡	청원군 내수읍 입동리 116	30,721	860,188	"	"	"	
11	잡	청원군 내수읍 입동리 96-1	14,220	398,160	"	"	"	
12	답	청원군 내수읍 입동리 439	885	24,780	"	"	"	

# 관 제 법 령 발 취

## [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, 같은 법 시행령]

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	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
<p><b>제10조(공유재산의 관리계획)</b>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(이하 "관리계획"이라 한다)을 세워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. 관리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.</p> <p>②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공유재산의 범위, 관리계획의 작성기준 및 변경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</p> <p>③ 관리계획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았을 때에는 「지방자치법」 제 39조 제1항제6호에 따른 중요 재산의 취득·처분에 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것으로 본다</p>	<p><b>제7조 (공유재산의 관리계획)</b> ① 법 제10조 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관리계획(이하 "관리계획"이라 한다)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요 재산의 취득 [매입, 기부채납, 무상 양수, 환지(換地), 무상 귀속, 교환, 건물의 신축·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, 출자 및 그 밖의 취득을 말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] 및 처분 (매각, 양여, 교환, 무상 귀속, 건물의 멸실, 출자 및 그 밖의 처분을 말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으로 한다.</p> <p>1.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. 이 경우 기준가격은 토지에 대해서는 「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개별공시지가[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 9조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(算定)한 금액을 말한다. 이하 "개별공시지가"라 한다]로 하고, 건물과 그 밖의 재산에 대해서는 「지방세법」에 따른 시가표준액으로 하되, 건물의 신축·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의 경우에는 토지보상비 등 토지를 취득하는 데 드는 비용을 제외한 건축비 및 시설비 등 사업비로 한다.</p> <p>가. 취득의 경우: 20억원 (시·군·자치구의 경우에는 10억원)</p> <p>나. 처분의 경우: 10억원 (서울특별시와 경기도의 경우에는 20억원)</p> <p>2. 토지의 경우 1건당 토지 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재산</p> <p>가. 취득의 경우: 1건당 6천제곱미터 (시·군·자치구의 경우에는 1천제곱미터)</p> <p>나. 처분의 경우: 1건당 5천제곱미터 (시·군·자치구의 경우에는 2천제곱미터)</p>

**【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】**

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조례	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조례 시행규칙
<p>제12조(공유재산 관리계획 ) ①법 제 10조 및 영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도지사가 다음 연도 예산 편성전까지 충청북도의회 (이하 “도의회”라 한다)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을 취득 처분하여야 한다 . 다만, 연도중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시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 도의회의결을 받아야 한다.</p> <p>②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작성은 재산관리 총괄 전담부서에서 하여야 한다. 다만, 공유림에 대해서는 공유임야관리 전담 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.</p> <p>제14조 (공유재산 관리계획서 )제 1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서의 작성 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.</p>	<p>제28조(공유재산관리계획서 등 ) 공유재산 관리계획서 및 공유재산 매매계약서 등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공유재산관리계획서(별지 제15호 서식)</li> <li>2. 공유재산매매계약서(별지 제16호 서식)</li> <li>3. 양여계약서(별지 제17호 서식)</li> <li>4. 공유재산매수요구서(별지 제18호 서식)</li> <li>5. 교환계약서 (별지 제19호 서식)</li> </ol>